

한국모태펀드 2018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8년도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1,880억원 이내 (문화 1,025억원, 특허 100억원, 중진특허협력 100억원, 보건 180억원, 관광 170억원, 환경 130억원, 스포츠 100억원, 중진 75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2018년 3월 14일(수), 14:00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형태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관광·스포츠계정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계정은 출자대상에 명시된 모든 조합 형태로 신청 가능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문화	게임	120	200	60%	○
	애니메이션·캐릭터	210	300	70%	○
	출판	35	50	70%	○
	일자리창출	360	600	60%	○
	해외연계	240	400	60%	○
	가치평가연계	60	100	60%	○
	소 계	1,025	1,650		
특허	공공특허사업화	100	200	50%	○
중진 특허 협력	신성장 특허기술사업화	100	167	60%	○
보건	보건산업 초기기술창업	180	300	60%	○
관광	관광산업육성	170	280	61%	○
환경	미래환경산업	130	260	50%	○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100	170	59%	○
중진	사회적기업	75	108	70%	○
합 계		1,880	3,135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문화 주)	게임	○ 게임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약정총액의 20% 이상은 창업 3년 이하의 게임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함
	출판	○ 해외진출을 위한 출판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약정총액의 20% 이상은 건당 1억원 미만 소액투자 하여야 함(소액투자 하는 경우, 해외진출을 위한 출판 프로젝트에 한정하지 않으며, 국내 출판 프로젝트에도 투자 가능함) * 해외진출을 위한 출판 프로젝트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①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한 출판 콘텐츠(웹툰, 웹소설 제외) 개발·발굴 프로젝트 ② 해외 독자를 위한 국내 출판 콘텐츠 번역, 글로벌 마케팅 등 현지화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캐릭터	○ 애니메이션 또는 캐릭터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일자리창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지분형태(우선주, 보통주, CB, BW 등) 투자 ① 자본금 10억원 이하, ②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③ 고용인원 10명 이하 * 단, 지분 투자와 동반하여 해당 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프로젝트 투자금액 중 동 기업 지분 투자액의 20% 상당 금액을 주목적 투자로 인정
	해외연계	○ 글로벌 콘텐츠* 및 글로벌 콘텐츠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특정 장르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정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함 * 글로벌 콘텐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① 국내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수익지분 또는 제작지분을 보유하고, 주요 후반 작업(CG/VFX/3D, 음악, 음향, 현상 등), 로케이션 서비스, 프로덕션 대행 과정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② 해외판매(배급, 방영, 유통, 공연 등)가 약정되어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조합 해산시점 전 충족) ③ 국내 제작자와 해외 제작자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 ④ 순 제작비의 10% 이상 해외자본을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단, 기획개발 프로젝트 투자 시에는 해외 자본을 순 제작비의 5% 이상 유치한 경우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인정)
	가치평가연계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은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특정 장르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정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함 * 펀드에서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제작비, 매출액 등)를 콘텐츠가치평가센터와 공유하여야 함
특허	공공특허 사업화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또한 공공특허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프로젝트에 10% 이상 투자 * 산업재산권 정보의 분석·제공·DB구축,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자문, 특허기술 사업화관련 전문 컨설팅,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프로젝트(IP sales & license back, IP 창출·매입·매각·라이선싱, IP 유동화, 해외 IP 수익화)</p> <p>***최근 5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았거나, 본 조합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전받을 기업</p>
중진 특허 협력	신성장 특허기술 사업화	<p>○ 특허기술사업화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또한 신성장특허*** 보유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특허청 지원사업 대상 우수 IP 보유기업에 50억원 이상 투자</p> <p>* 산업재산권 정보의 분석·제공·DB구축,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자문, 특허기술 사업화 관련 전문 컨설팅, 특허관리전문회사 등</p> <p>**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프로젝트(IP sales & license back, IP 창출·매입·매각·라이선싱, IP 유동화, 해외 IP 수익화)</p> <p>***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등 5대 분야 유망 신기술(국가지식재산위원회, '17.9월)</p>
보건	보건산업 초기기술창업	<p>○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병원 소속 연구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창업한 기업*** 및 병원 연구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고, 최초 투자 당시 창업 1년 이내 보건산업분야 기업에는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그리고 신주 투자와 병행하여 지분 관계 정리 등을 목적으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p> <p>* 보건 산업분야 기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2호의 ‘제약산업’ 영위기업 ② 의료기기법 제2조1항에 따른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관련 산업 영위기업 ③ 화장품품법 제3조에 따른 제조판매업 등록 기업 ④ 신성장 공동기준 내 건강·진단 분야 품목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관련 산업 영위기업 <p>**최초 투자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자 중 업력 5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p> <p>***보건의료인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술적 자문역할을 하는 이사인 경우 (보건의료인: 「의료법」 상 의료인, 「약사법」 상 약사·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p> <p>****①병원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②병원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하거나, ③병원에서 이전된 기술</p>
관광	관광산업육성	<p>○ 관광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소액투자(건당 5억원 이내, 업체당 총 10억원 이내) 하여야 함</p> <p>* 관광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②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④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및 크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프로젝트 ⑤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舊 창조관광기업)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사업,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환경	미래환경산업	○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단,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투자대상 포함 (약정총액 20%이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중진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중 존속기간까지(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단, 존속기간 내에(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주목적투자대상에서 제외 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설치된 사회적기업투자조합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주)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의무 비율

- 약정총액의 10% 이내(일자리분야의 경우 20%)에서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 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출자자 관련 투자집중 여부, 자펀드 수익률 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문화	특허	중진 특허 협력	보건	관광	환경	스포츠	중진 (사회적 기업)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	○	○	○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	○	○	○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 확정으로 신속한 펀드 결성이 가능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	○	○	○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			○		○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	○	○	○	○	○	○	○
문화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가 조합 출자에 참여한 경우	○							
약정총액의 15%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단, 수도권 지역은 제외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운용사인 경우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보건산업에 관련된 엑셀러레이터와 협력 방안(초기기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전략)을 제안하는 경우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 단 보건계정의 경우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핵심인력이 3명 이상 참여하여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 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

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누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누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한 조합은 예외로 함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
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 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하였으나,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III.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예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비율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 <환경계정>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방안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th> </tr>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colspan="3">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0%;">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rowspan="2" style="width: 20%;">① 해당사항 없음</td> <td style="width: 20%;">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style="width: 20%;">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계정, 증진특허협력> 민간 출자자를 대상으로 ①, ② 조건 중 운용사가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 <보건계정> 운용사가 펀드 약정총액의 5% 이상을 우선손실충당하고, 남은 손실액에 대해 모태펀드가 펀드 약정총액의 10% 우선손실충당(최대 30억까지)할 수 있으며,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운용사와 모태펀드는 우선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자조합의 투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 상 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 다만 보건계정의 경우 조합 약정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0억원에 대한 투자의무만 부여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 															

항 목	내 용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계정 사회적기업 분야,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존속기간 8년 이상, 투자기간 4년 ○ (보건 계정) 존속기간 10년, 투자기간 5년 ○ (그외 계정)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특허계정·중진특허협력 신청 운용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중진계정 사회적기업 분야, 문화계정은 2.0% 이내 적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특허·문화계정·중진특허협력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계정 사회적기업 분야, 특허계정 : 0%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 문화계정 : 2%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 보건·관광·환경계정, 중진특허협력 : 3%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 스포츠계정 : 5%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중진계정 사회적기업 분야는 25% 이내, 문화계정은 30% 이내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특허·문화계정·중진특허협력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

항 목	내 용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계정)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문화계정 일자리창출분야)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문화·관광·스포츠·환경계정)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p>※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20%(문화계정 일자리창출분야는 25%)를 초과할 수 없음</p> <p>※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p>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적용 가능 ○ 보건 계정의 경우 다음 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산업에 관련된 엑셀러레이터와 협력방안(초기기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전략) 제안이 필수 ② 운용사와 출자자 간 협의 하 보건산업 섹터별*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10명 내외)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최종투자 심사시 기술자문단에 속한 외부 전문가** 참여 <p>*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진단분야</p> <p>**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지정하여 참여시킴(의결권 보유, 동일인이 3번 이상 참여 불가).</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정 프로젝트 투자시 다음 사항 적용 1. 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 투자금지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 -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 이전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 2. 준수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설치(단, 자조합 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표준 계약서 적용 의무 대체 가능 - 공연예술 분야 투자시, 해당 공연의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 금액)를 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8. 3. 14.(수)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8. 4월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8. 7월말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및 USB 메모리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8. 3. 14.(수)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8. 3. 14.(수)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 및 USB메모리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8. 2. 23.(금)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지하1층 텃스홀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 행사 당일 13:30부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있음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 가. 문화, 스포츠계정 : 02-2156-2456, fof@k-vic.co.kr
 - 나. 특허, 보건 계정 : 02-2156-2025, fof@k-vic.co.kr
 - 다. 환경 계정 : 02-2156-2187, fof@k-vic.co.kr
 - 라. 관광 계정 : 02-2156-2485, fof@k-vic.co.kr
 - 마. 중진 계정 사회적기업 분야 : 02-2156-2025, fof@k-vic.co.kr
 - 바.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8. 2. 21.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최대주주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회사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조합운용실적	조합 수익성에 대한 평가
	투자실적	투자소진을 평가(조합 및 핵심인력 기준)
	준법성	최근 3개년 관련 법규 등 위반내용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경력,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편/참여인력의 팀웍, 핵심 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